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46
----------	-----

2019. 4. 22
도시계획관리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3. 29. 이상훈 의원
2. 회부일자 : 2019. 4. 3.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9. 4. 22. 상정·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이상훈 의원)

1. 제안이유

주민참여에 기반한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서울시는 2016년부터 주민공감대 형성, 주민역량강화와 공동체활성화 사업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 전에 도시재생 사전단계 사업으로서 희망지사업, 거버넌스구축사업(후보지사업) 등을 시행해 오고 있음. 다만, 희망지와 후보지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하여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어 도시재생 사전단계 사업의 정의와 역할, 그리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재생 사전단계 사업의 정의 및 세부 사업내용을 명시하고, 사전단계 사업의 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Ⅲ. 검토보고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의 사전단계 사업에 해당하는 희망지사업과 거버넌스구축사업(후보지사업) 등의 추진과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상훈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4월 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및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 전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사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도시재생 사전단계 사업의 시행 및 지원) ①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 전 도시재생의 공감대 형성과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한 희망지사업, 거버넌스구축사업,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전단계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전단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시는 2016년 1월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이전 ‘시민역량강화 프로세스’를 도입한 이래, 2018년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하 “활성화지역”) 3단계 프로세스’를 마련하였으며, 기존의 계획 및 실행단계 이전에 사전단계로서 거버넌스 및 구상단계를 추가하였음.

- 이는 1단계 도시재생사업(13개소)의 경우 협동조합, 상생협약 체결, 거점사업 진행 등 자력재생의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기는 하나, 주민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계획수립과 역량강화의 동시 추진의 어려움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주민 주도 활성화계획 수립에 한계를 보이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도시재생에 대한 공론화 및 주민공감대 형성, 주민역량강화등 추진 주체의 책임있는 참여를 위한 사전기반 마련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임.

<활성화지역 3단계 운영 프로세스>



- 서울시는 사전단계 사업인 희망지사업과 거버넌스구축사업(이하 “희망지 사업등”)의 운영 종료 후 역량이 우수한 지역을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실제로 희망지사업¹⁾의 경우, 서울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6

1) ‘희망지사업’은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의 사전단계로, 희망지에 대해 1년 동안 현장거점마련 및 주민 모임 운영, 교육 및 홍보, 지역의제 발굴 및 주민공모사업 추진, 도시재생 협력관계 구축 등 다양한

개소를 희망지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약 7개월에서 12개월 가량 사업을 진행하여 이들 지역 중 16개소²⁾(붙임 참조).(도시재생뉴딜 1개소³⁾ 제외)를 활성화지역으로 선정⁴⁾하였음. 도시재생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에는 2단계 활성화지역(근린재생형)으로 6개 지역을 기 반영하였고, 나머지 10개 지역을 전략계획상 3단계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08)이 금번 제286회 임시회에 상정·심사될 예정임.



- 거버넌스구축사업의 경우는 8개소를 선정하여 시민 아이디어 공모, 아이디어 캠프 개최, 소규모 재생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통해 중심지 재생사업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한 후 이들 지역 모두 전략계획상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경제기반형 1개소, 중심시가지형 7개소)

주민역량강화 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재생 공감대 형성 등을 도모하는 사업임.

2) 희망지사업 대상지는 2016년 19개 지역, 2017년 12개 지역, 2018년 15개 지역이 선정되어, 이 중 2017년 6개소, 2018년 5개소, 2019년(상반기) 5개소, 총 16개소가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었음.

3)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 일원(제기7), 9.8만㎡

4) 2017년 6개소, 2018년 5개소, 2019년 상반기 5개소(일반근린형 4, 주거지지원형 1개소) 선정

으로 신규 지정(2018년)하였음.



- 이 개정조례안은 위에서 살펴본 희망지사업등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도시재생 사전단계 사업의 기능과 정의, 그리고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됨.
- 다만, 도시재생을 마을공동체로 한정적으로 인식하거나, 관 주도의 희망지사업등의 진행, 규모의 과다에 따른 원만한 사업운영의 어려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공모에서 탈락한 희망지사업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희망지사업에 대한 현장 인터뷰 결과 나온 문제점⁵⁾들에 대해서도 정책적 고민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됨.

5)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특별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현실과 과제 -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8. pp. 33~58.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도시재생 사전단계 사업의 시행 및 지원) ①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 전 도시재생의 공감대 형성과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한 희망지사업, 거버넌스구축사업,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전단계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전단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4조(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및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 전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사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u>제24조(도시재생 사전단계 사업의 시행 및 지원) ①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 전 도시재생의 공감대 형성과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한 희망지사업, 거버넌스구축사업,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전단계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u></p> <p><u>② 시장은 사전단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u></p>